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양양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8,324	6,800	8,177	7,288	30,342	2,189	1,074	1,747	707
국 비	31,269	4,815	4,046	3,164	17,743	444	0	1,058	0
시·도비	7,264	496	845	1,839	2,819	853	100	176	134
시·군·구비	19,791	1,489	3,286	2,285	9,780	892	974	513	5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19,269	235,574	249,392	259,178	344,317
사회복지분야(B)	39,441	39,324	42,082	46,153	58,32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99	16.69	16.87	17.81	16.94
인구수 (C)	27,479	27,218	27,207	27,347	27,72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35	1,445	1,547	1,688	2,1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비는 18년대비 116억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52,092	26,499	7.53%	
민간경상보조 (307-02)		5,901	1.68%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994	0.28%	
민간행사보조 (307-04)		1,708	0.4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592	2.1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047	2%	
민간자본보조 (402-01)		3,257	0.9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19,269	235,574	249,392	264,280	352,092
지방보조금(민간)	23,863	24,404	24,716	23,059	26,499
비율	10.88%	10.36%	9.91%	8.73%	7.53%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 민간경상보조 : [별지3]작성
- ❖ 민간행사보조 : [별지4]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5]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5]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지6]작성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6]과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양양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4,317	4,685	1,3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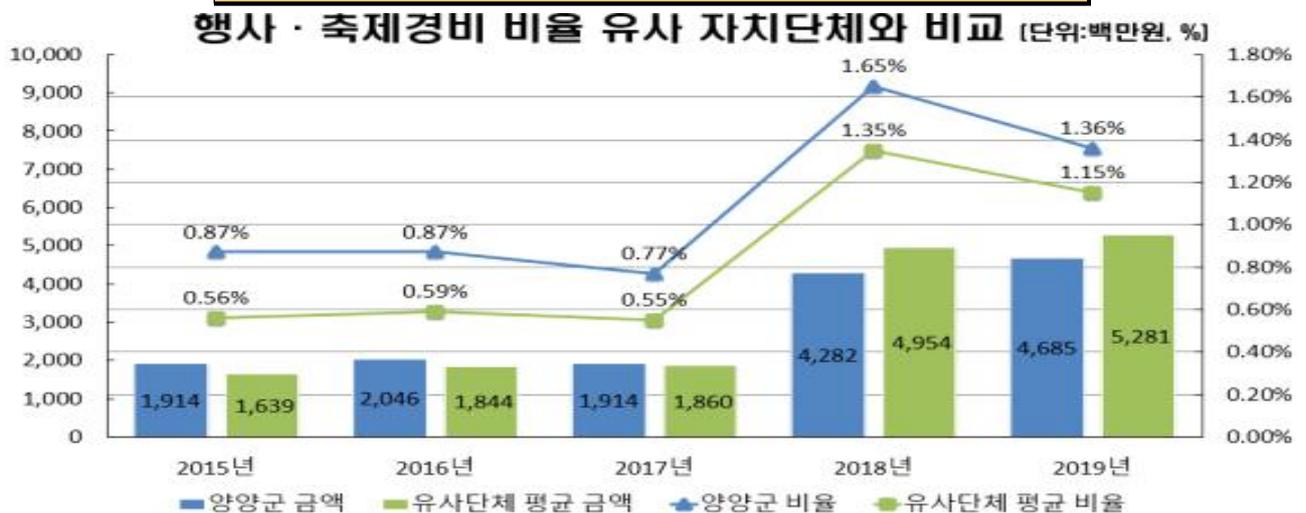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19,269	235,574	249,392	259,178	344,317
행사·축제경비	1,914	2,046	1,914	4,282	4,685
비율	0.87%	0.87%	0.77%	1.65%	1.36%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18년도 증가사유 :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증가
- ☞ 19년도 증가사유 : 서핑페스티벌 3억9천만원 등 서핑관련 행사축제 증가